

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3225-1
----------	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6. 2. .
제안자 : 강성삼 의원

1. 수정이유

- 원안의 신설 조문에서 정의한 약칭이 후속 조문에서 재정의 되고, 근거 법령의 인용 조문 이동을 본 조례에서 반영하지 않은 점 등 용어 통일성을 위해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약칭의 중복 삭제
- 나. 조문의 용어 통일에 관한 사항(안 제3조, 제9조, 제17조, 제19조)

3. 수정안 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하남시조례 제 호

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2조 중 “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”를 “법에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(이하 “특별교통수단 등”이라 한다)”을 “특별교통수단 등”으로 한다.

제7조를 제6조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같은 법 시행”을 “시행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의 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”으로서”를 “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7조제3항제1호 중 “영 제14조의5”를 “법 시행령 제14조의6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1항 중 “별표2”를 “별표 2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법 시행”을 “시행”으로 한다.

『위의 수정 사항 외에는 개정안과 같음』

수정안조문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2조(시장의 책무) 하남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「<u>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</u>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제3조(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등) ① <u>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수단(이하 “특별교통수단 등”이라 한다)과 이동지원센터</u>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<u>제7조</u> (생략)</p>	<p>제2조(시장의 책무) ----- ----- ----- <u>법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3조(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등) ① <u>특별교통수단 등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<u>제6조</u> (개정안 제7조와 같음)</p>

제9조(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) ① 법 제16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경기도 표준지침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한다.

② 대체 수단의 이용대상자는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의 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- 1. ~ 5. (생략)

제17조(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·② (생략)

③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- 1. 영 제14조의5에 따른 기관 및 단체
- 2. (생략)
- ④ ~ ⑧ (생략)

제19조(교육) ① 시장은 법 제13

제9조(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) ① ----- 시행

② -----
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-----

- 1. ~ 5. (개정안과 같음)

제17조(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·② (개정안과 같음)

③ -----

- 1. 법 시행령 제14조의6-----

- 2. (개정안과 같음)
- ④ ~ ⑧ (개정안과 같음)

제19조(교육) ① -----

조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, 교육 대상자 및 내용은 별 표2와 같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 방법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.

③ ~ ⑤ (생략)

----- 별 표 2-----.

② -----
----- 시행-----

--.

③ ~ ⑤ (개정안과 같음)